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6고단23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업무방해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위

판 결

사건 2016고단2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왕선주(공판)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9. 24. 13:0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케이비 국민카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상담원 D(여, 42세)에게 "보지를 찢어버린다", "너 보지털 있냐", "니 애미 니 애비 자지를 갖다가 확 씨발 잘라버리던지"라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한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피해자 들에게 전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3시간 30분 동안 9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비 국민카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심한 욕설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함으로써 위력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으로써 피해자의 고객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D. F.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 1. 별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심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피고인과 통화한 상담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김희진